



## 보건복지동향

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.

- 편집자 주 -

###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

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주관,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주최로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-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

- 65세 이상 노인인구중 한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수가 86.7%로 조사되었고,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도 8.2%로 추정됨(이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).
- 특히 신체적·정신적으로 허약해지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수가 전체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.
- 따라서 이들 노인의 보건의료와 간병수발을 포함하는 장기요양보호제도를 마련하여 가족 및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음.

#### -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수의 추계

- 2000년 현재 재가노인 중 63만 5천명(재가노인의 18.9%)과 노인복지시설입소노인 중 6천명(입소노인의 60.7%)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, 특히, 간병수발자가 없는 독거 와상노인 3천명(재가노인의 0.1%) 정도로 추정됨.

- 이중에서 소득수준, 간병수발자의 유형에 따라 단계적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을 추계함.

— 단계별 재가보호 노인의 추계

- **1단계:** ①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노인가구로서, ② 수발자 없는 최종증 장애상태 독거노인과 수발자가 있더라도 노인배우자로부터 수발을 받는 최종증 장애상태 노인, ③ 수발자 없는 중증 장애상태 독거노인과 수발자가 있더라도 70세 이상 배우자 노인이 수발자인 경우  
※ 총 9만 9천명(65세 이상 노인의 2.9%에 해당)으로 추정
- **2단계:** ①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노인가구로서, ② 최종증 장애상태의 모든 노인, ③ 중증 장애상태로 자녀 간병수발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노인이거나, 경증 장애상태의 독거노인  
※ 총 20만명(65세 이상 노인의 5.9%에 해당)으로 추정
- **3단계:** 노인가구 소득이 80만원 미만인면서, 간병수발자의 특성과 관계 없이 장기요양보호 대상이 되는 노인  
※ 총 34만 3천명(65세 이상 노인의 10.1%에 해당)으로 추정
- 3단계까지의 장기요양보호는 국가 책임으로 하고, 그 이상의 중상 소득 계층 노인은 민간시장 부문에서 담당

###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: 주거급여기준 확정

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게 이번 달부터 지급(매월 20일 지급)할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기준을 확정, 발표했다. 이 같은 급여기준은 지난 10월 7일 관계부처 차관 및 관련전문가, 각계 대표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최선정 장관)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.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와 교육·의료·주거·자활·장제·해산급여 등 7가지 종류의 급여가 제공되며, 이 중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임.

- 우선,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(주거·교육·의료급여액, 기타 타법령 지원액)을 뺀 나머지를 지급함.  
 ※예: 소득이 전혀 없는 4인가구의 경우 [최저생계비 93만원 - 가구 소득 0원 - 타 지원액 23만 3천원 = 69만 7천원] 정도의 생계비가 지원됨.
-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계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던 것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·신설한 것임.
- 금년도에는 가구규모별로 1~2인가구는 2만원, 3~4인가구는 3만 2천원, 5~6인가구는 4만 4천원을 매월 지급함.

##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

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원으로 2000년 10월 11일(수)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추진기반 정비와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체화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후 사회복지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.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안을 확정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. 동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.

- 시·군·구와 시·도별로 자체 지역에 맞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지역사회중심의 복지기반을 정비토록 함.
- 시·군·구에 민간복지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 '지역복지협의체'를 설치하여 지역복지계획의 심의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민간의 참여와 협조를 수행토록 함.
-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절차를 명확히 하여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, 시·군·구에서 개인별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토록 함.
-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외국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함.